

이사회 운영규정



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

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07년 5월 21일
개정 2012년 8월 15일
개정 2013년 8월 9일
개정 2018년 8월 14일
개정 2019년 12월 18일
개정 2022년 1월 25일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(이하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이사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
- ② 이사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.

제 3 조 (이사의 구분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제 4 조 (이사의 소집)

- ① 정기이사회는 년1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③ 이사의 소집은 회일의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. 단,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5 조 (이사회 의 성립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 된다.

제 6 조 (이사회 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당해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없으며,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이사회 의 결의사항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결의로 한다.
 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부의사항
 - 2. 주주총회 의 소집사항. 위임사항. 제출사항
 - 3. 회사 의 중요한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회사 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5. 회사규정 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6. 소송제기와 화해, 조정, 중재에 관한 사항
 - 7. 회사가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선 대응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
 - 8. 주식의 양도, 신주 의 발행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9. 자금의 차입 및 자본 증가에 관한 사항
 - 10.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
 - 11. 주주 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- 12. 주주들의 진정, 청원에 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
 - 13. 임원과 회사간의 거래
 - 14. 지점,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와 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
 - 15. 영업장의 위탁운영 및 관리, 임대 (건당 월 1,000만원 이상)
 - 16. 회원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
 - 17.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
- 18. 예약제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19. 단체팀 관리에 관한 사항
 - 20. 각종 공식경기의 결정 및 준비에 관한 사항
 - 21. 10팀이상의 비등록단체팀 개최 승인에 관한 사항
 - 22.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결의할 안건은 이사회개최일 5일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의사진행 협조)

- ①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
- ② 이사는 이사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 하거나 품위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9 조 (의사진행 방해 제재)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저해하는 언행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하여 일시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결방법의 특례) 대표이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이사 아닌 자의 출석)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결정으로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 등 이사가 아닌 자를 출석케하여 의안에 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감사의 출석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이사회내 분과위원회)

- ①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분과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4 조 (특별위원회) 이사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1.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2. 특별위원회의 조직구성은 이사 및 해당 위원으로 구성한다.
다만,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2명이내의 위원을 둘수 있다.
3. 특별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4. 특별위원회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거나 설치목적 달성을 때 까지만 존속한다.

제 15 조 (위임전결사항) 이사회는 사무처리의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전결 할 수 있다.

1. 고정거래처로부터 물품구매(상품, 식품, 저장품)
: 월간 건당 2,000만원 이하
2. 수선 및 보수공사, 용역비, 보험료 : 건당 2,000만원 이하
3. 고정자산 취득(장비, 집기비품, 공구 등) : 건당 2,000만원 이하
4. 영업장 운영 위탁 및 임대 : 월간 건당 1,000만원 이하
5. 의무적 경비(급여, 상여금, 각종수당, 제세금 및 공과금 등)
: 지급액 및 납부금액

제 16 조 (임원실비변상지급) 임원 및 이사회에서 위촉된 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출장, 차량 등 경비 발생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이사회 의사록)

- ①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간사는 이사회에서 그 전 이사회 의사록을 낭독하고 참석이사에게 고지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. 4. 24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. 4. 1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. 8. 15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. 8. 14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. 12. 18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. 1. 25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규정)

- ①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규정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 전의 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분과위원회 규칙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(이하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내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1. 총무분과위원회
 2. 경기분과위원회
 3. 상별분과위원회
-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분과위원장 1명, 분과위원 3~4명으로 구성한다.
-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.

제 3 조 (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선출)

-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가 지명한다.
-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- ③ 분과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참석 분과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분과위원의 임기)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분과위원회의 소집)

-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분과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간사는 회일의 3일전에 일시와 장소, 상정할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에게 통지한다. 다만 위원이 모두 동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.
단, 통지의 방법은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
제 6 조 (분과위원회의 성립)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.

제 7 조 (분과위원회의 결의방법)

- ① 분과위원회의 결의는 출석분과위원의 과반수의 가결로 결정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- ② 분과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당해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과위원은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, 분과위원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분과위원회의 업무)

- ①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총무분과위원회
 - 가.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 - 나. 경기분과위원회 및 상벌분과위원회 이외의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
 - 2. 경기분과위원회
 - 가. 경기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- 나. 핸디캡 사정 및 단체팀 관리에 관한 사항
 - 다. 각종 공식경기의 결정 및 준비에 관한 사항
 - 라. 3팀이상의 비등록단체팀 개최 승인에 관한 사항
 - 마. 기타 경기 관련 사항
 - 3. 상벌분과위원회
 - 가.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 - 나.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

제 9 조 (주심상벌위원의 지명)

-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표창·포상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상벌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- ② 주심상벌위원은 표창·포상 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표창·포상 대상 및 내용과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주심상별위원회는 지정 받은 표창·포상 건 또는 징계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분과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표창·포상 대상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과 클럽내장객에게는 심의 후 표창·포상 할 수 있다.

1. 회원으로서 공식경기 등에 입상하여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 자
2. 회사의 매출향상 및 재해의 미연방지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
3.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
4. 기타 이사회에서 표창·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자

제 11 조 (표창·포상 시기) 회원과 클럽내장객 대한 표창·포상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매년 12월말
2. 기타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.

제 12 조 (표창·포상 절차) 회원과 클럽내장객에 대한 표창·포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.

1. 대표이사는 표창·포상의 상신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호 서식의 표창·포상신청서 공적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2. 이사회는 표창·포상 대상자를 심의한 후 상벌분과위원회 구성을 결정한다.
3. 위원회는 표창·포상 대상자 및 포상의 종류, 부상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상신한다.
4. 이사회 승인 후 대표이사는 표창·포상자와 시기,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 13 조 (징계사유)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회사에서 정한 제반규칙 및 골프에티켓 등을 위반했을 때
2. 골프장 및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, 회사와 골프장 이용객, 관련 종사자의 업무방해, 골프장 이용방해, 기타 명예 등을 훼손했을 때
3. 골프장 및 골프장 이용, 캐디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

-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
4. 명백한 허위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, 고소, 고발, 진정 등으로 물적, 신용, 영업, 기타 명예적 손해를 끼쳤을 때
 5. 임원 등 선거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임원선거를 방해했을 때
 6. 주주총회 개최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때
 7.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
 8.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
 9. 폭력, 모욕, 도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
 10.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했을 때
 11. 직원 및 캐디에게 폭행 및 폭언, 성폭행, 성희롱 등을 했을 때
 12. 공식대회에서 스코어를 조작했을 때
 13. 비회원이 회원 명의를 도용하여 입장 했을 때
 14. 1년 이내 징계의 종류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
 15.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

제 14 조 (징계의 종류)

-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1. 경고
 2. 6개월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
 3. 1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
 4.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
 5. 제명
- ② 위 징계 결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제명된 회원은 정관 제5조의 주주의 자격 및 권리의무를 상실한다.
다만,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징계개시의 청구)

- ①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

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이사회는 징계 건을 심의하여 징계하여야 된다고 인정되면 상벌분과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상벌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벌분과위원장에게 징계개시 청구를 하여야 한다.
- ④ 상벌분과위원장은 대표이사의 징계 개시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개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징계개시청구 절차)

- ① 징계개시 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, 징계혐의 사실, 징계이유서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 청구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 청구를 하지 못한다. 다만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받을 자가 소송기타 법적절차의 착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하거나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이다.

제 17 조 (징계개시 청구의 통지)

- ① 분과위원장은 징계개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개시 통지서와 징계개시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
- ② 징계개시 통지서에는 징계혐의사실,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, 증거자료의 제출, 증인의 신청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최초의 심사기일 통지는 그 기일의 5일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가 징계개시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, 본인 잠적 기타 부득이한 출석통지가 불가능할 시 발송한 등기우편 2회 송부 근거를 남기고 위원회 임의로 징계처분하고 징계 회의록에 이 사실을 기록한다.

제 18 조 (심사기간) 분과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게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징계대상자의 소명기회 부여)

- ① 징계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② 징계대상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여 조사서 또는 진술에 가름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.
- ③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징계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심사방법)

- ① 분과위원회는 조사관이 되며 조사관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조사위원을 대행한다.
- ② 조사사는 사실 확인 및 증거와 본인을 신문하여 진술조서 또는 본인 자필 진술서를 받을 수 있으며,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징계대상자는 조사관에게 사실을 진술하고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조사거부시 조사관은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사서 또는 진술에 가름할 수 있다.
- ④ 조사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, 관계문서 또는 물품을 환수 통제할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제척, 기피, 회피)

- ①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사건은 심사에서 제척된다.
-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 본인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 22 조 (문서의 송달) 문서의 송달은 회원명부에 등재된 주소지로 우편(내용증명)으로 송달한다.

제 23 조 (결 정)

- ① 분과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재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, 가부동수일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24 조 (징계결정서) 징계의 의결은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 결정서에는 의결내용을 기재하고 분과위원장과 출석한 분과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25 조 (결정의 통보 및 재심의 등)

- ① 분과위원회는 징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는 위 ①항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는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상별분과위원회의 결정대로 징계결정을 하는 결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가 재심을 결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분과위원회 의사록)

- ①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분과위원회의 의사록은 출석한 분과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. 5. 2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. 8. 15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. 8. 9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. 8. 14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. 2. 9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규정)

- ①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규정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 전의 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표창·포상 신청서

표창·포상 대상자	회원번호		가입일자	
	성명		주소	
표창의 종류				
◆공적개요				
◆공적의 구체적 내용				
위와 같이 표창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시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 年 月 日				
(주)창원컨트리클럽 이사회 귀중				

(주) 창 원 컨 트 리 클 럽

징계사유의 유형

징계종류	징 계 사 유	비고
제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주총회 개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◦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◦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◦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유가 매우 엄중한 자 ◦ 직원 및 캐디에게 성폭행 등을 한 자 ◦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◦ 2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및 골프장 입장 불허에 해당하는 징계유형을 반복해서 위반한 자 	
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◦ 임원 등 선거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임원선거를 방해한 자 ◦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유가 중한 자 ◦ 직원 및 캐디에게 폭행 및 성추행 등을 한 자 ◦ 고성과 폭언, 욕설 등으로 영업방해, 업무방해를 한 자 ◦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	
1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, 모욕, 욕설, 성희롱 등을 한 자 ◦ 공식대회에서 스코어를 조작한 자 ◦ 비회원이 회원 명의를 도용하여 입장한 자 ◦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,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	

징계종류	징 계 사 유	비 고
6개월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◦ 1년 이내 징계의 종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◦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◦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,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	
경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사에서 정한 제반규칙 및 골프에티켓 등을 위반한 자 ◦ 폭력, 모욕, 도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◦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◦ 지연 플레이 한 자(9홀 2시간 20분 초과한 자 또는 한 개홀을 비운 자) 	

징 계 절 차

1. 징계개시 신청(대표이사 → 이사회 보고(심의 후 징계 개시 결정))
2. 징계개시 청구(대표이사 → 상벌분과위원장)
(징계 대상자 인적사항, 징계 혐의사실, 징계이유서 등 기재)
(징계 개시청구서 1부, 1년내 징계개시 청구)
3. 상벌분과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기간
(2개월 내 징계여부 결정. 단, 1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)
4. 상벌분과위원회 개최 통지(상벌분과위원장 → 분과위원)
5. 주심상벌위원 지명 → 생략가능
6. 징계개시 통지(상벌분과위원장 → 징계 대상자)
(징계개시 청구서 사본 및 징계개시 통지서 1통 송부)
7. 상벌분과위원회 출석 통지(상벌분과위원장 → 징계 대상자)
8. 상벌분과위원회 의결기록부 작성
9. 상벌분과위원회 부의조서 작성
10. 징계결정서 작성(상벌분과위원장과 위원 서명 또는 날인)
11. 징계결정 통보 및 통지(상벌분과위원장 → 대표이사 서면 통보)
12. 대표이사 → 이사회 소집 → 상벌분과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부 의결
13. 징계처분 통지서 발송(대표이사 → 징계 대상자)

징계개시 청구서

상별분과위원장 귀하

징계개시 청구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회원번호	회원권 취득일자	비고

2. 징계 혐의사실

3. 첨부 : 징계이유서 1부

년 월 일

(주)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

상별분과위원회 개최 통지서

상별위원 귀하

년도 제 차 상별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기
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
2. 장 소 :
3. 부의안건 :

(주)창원컨트리클럽 상별분과위원장 (인)

징계개시 통지서

징계개시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징계 혐의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회원번호	회원권취득일자	비고

2. 징계 혐의사실

3. 심사기일 : . .

4. 상벌분과위원회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

※첨부 : 상벌분과위원회 출석통지서

년 월 일

(주)창원컨트리클럽 상벌분과위원장 (인)

제 차 상별분과위원회 의결 기록부

1. 개최일자 : 년 월 일

2. 개최장소 : 당사 회의실

3. 참석인원 :

--

4. 부의안건 :

--

5. 상별분과위원회 회의내용

작성자 상별분과위원회 간사 성 명 :

상벌분과위원회 부의조서

년 월 일
년 제 차 호

1. 제 목 :

2. 관련대상자 :

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회원번호	회 원 권 취 득 일 자	비 고

3. 상벌내용

————— 상벌요약 —————

4. 기타 참고사항 (과거 징계사항 등)

5. 상벌조치

상벌제의		상벌결정	
------	--	------	--

징계처분 통지서

인적사항	성명 :	주소 :
징계처분 내 용	일 자	
	징 계 내 용	
징계사유		
비 고		

(년 제 차 상별분과위원회 의결)

년 월 일

(주)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인

상별분과위원회 출석 통지서

인적사항	성 명	주 소
출석이유	귀하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별분과위원회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상별분과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	
출석일시		
출석장소		
기 타	1. 진술을 포기코자 할 때에는 본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하단의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고 소정일시까지 출석치 않을 때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.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불가능할 시는 서면 진술도 가능함	
비 고		

년 월 일

(주)창원컨트리클럽 상별분과위원장 (인)

<절 취 선>

상별분과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증

성 명		주 소	
-----	--	-----	--

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소집되는 상별분과위원회의 출석 통지서를 틀림 없이 수령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수령인 :

(주)창원컨트리클럽 상별분과위원장 귀하

<절 취 선>

상별분과위원회 출석 포기서

성 명		주 소	
-----	--	-----	--

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소집되는 상별분과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으나 _____으로 인하여 출석을 포기하고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며, 상별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본인

(주)창원컨트리클럽 상별분과위원장 귀하